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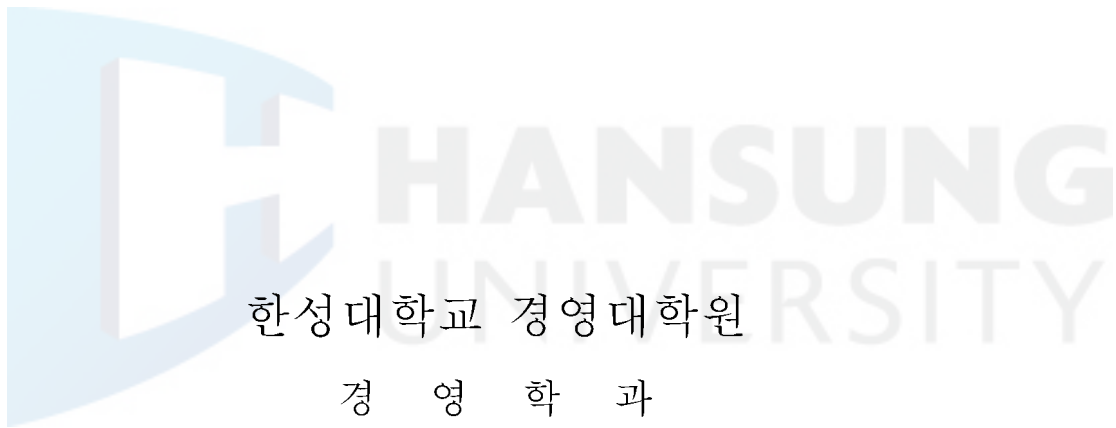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를 중심으로 -

2011년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변 용 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internal audit**

- focused on the internal audit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sector -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변 용 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 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internal audit**

- focused on the internal audit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sector -

위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 방 경 영 전 공

변 용 완

변용완의 경영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경 영 학 과

국방경영전공

변 용 완

본 연구는 방위사업분야 관련기관, 정부기관 및 외국 주요 선진국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 분석결과 방위사업분야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자체감사 기구는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체감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독립성, 기관장의 의지,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자체감사를 활성화 하는 데 중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체감사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방위사업분야의 자체감사기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통 개선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첫째, 자체감사기구가 외부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 방안으로 ① 자체감사기구

를 설치해야한다. ②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 개방형 임용 및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③감사기구 장의 권한 및 신분보장을 해야 한다.

둘째,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①전문 감사인 선발 및 우대(優待)조치를 해야 한다. ②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③외부 전문가의 참여 및 내부 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해야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최근의 금융감독원 및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서 나타난 감사인의 윤리성 문제로 인하여 감사원 등 감사기구에 대한 신뢰성이 실추되어 청렴성, 공정성, 객관성, 보안유지 등으로 구체화된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주요어】** 자체감사, 독립성, 전문성, 방위사업분야, 신분보장



# 목 차

|                            |           |
|----------------------------|-----------|
| <b>제 1 장 서론</b>            | <b>1</b>  |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         |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 <b>제 2 장 자체감사제도의 고찰</b>    | <b>4</b>  |
| 제 1 절 감사제도의 개념             | 4         |
| 1. 감사의 의의                  | 4         |
| 2. 감사의 기능                  | 5         |
| 3.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체계            | 7         |
| 제 2 절 자체감사의 개념             | 8         |
| 1.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 8         |
| 2. 자체감사                    | 8         |
| 3.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논의   | 11        |
| <b>제 3 장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b> | <b>14</b> |
| 제 1 절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 14        |
| 1. 방위사업청 자체감사기구            | 14        |
| 2. 국방기술품질원 자체감사기구          | 20        |
| 3. 국방과학연구소 자체감사기구          | 29        |
| 4.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의 시사점      | 34        |
| 제 2 절 정부기관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 38        |
| 1. 독립성                     | 38        |
| 2. 전문성                     | 40        |
| 3. 자체감사활동                  | 41        |
| 4. 정부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시사점        | 41        |



|                                  |                                    |           |
|----------------------------------|------------------------------------|-----------|
| 제 3 절                            | 주요 선진국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         | 43        |
| 1. 미 국                           | .....                              | 43        |
| 2. 영 국                           | .....                              | 44        |
| 3. 미국·영국의 자체감사기구의 시사점            | .....                              | 46        |
| <b>제 4 장</b>                     | <b>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 .....</b> | <b>48</b> |
| 제 1 절                            | 우리나라의 자체감사 운영 방향 .....             | 48        |
| 1. 개 요                           | .....                              | 48        |
|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의 주요내용 | .....                              | 48        |
| 제 2 절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 방안 .....            | 51        |
| 1. 필요성                           | .....                              | 51        |
| 2. 독립성 제고 방안                     | .....                              | 52        |
| 제 3 절                            |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제고 방안 .....            | 55        |
| 1. 필요성                           | .....                              | 55        |
| 2. 전문성 제고 방안                     | .....                              | 56        |
| <b>제 5 장</b>                     | <b>결 론 .....</b>                   | <b>59</b> |
| <b>【참고문헌】</b>                    | .....                              | 62        |
| <b>ABSTRACT</b>                  | .....                              | 65        |

## 【 표 목 차 】

|                                   |    |
|-----------------------------------|----|
| [표 2-1] 자체감사의 종류 .....            | 10 |
| [표 3-1] 주요감사 실시 현황 .....          | 19 |
| [표 3-2] 감사 자격조건 .....             | 24 |
| [표 3-3] 일상감사 대상 .....             | 28 |
| [표 3-4] 일상감사 대상 .....             | 34 |
| [표 3-5]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 운영 현황 ..... | 37 |



## 【 그림 목 차 】

|                            |    |
|----------------------------|----|
| <그림 2-1> 공공감사체계도 .....     | 7  |
| <그림 3-1> 방위사업청 조직도 .....   | 15 |
| <그림 3-2> 국방기술품질원 조직도 ..... | 21 |
| <그림 3-3> 국방과학연구소 조직도 ..... | 30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최근 이슈가 된 금융감독원 및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아직도 금품수수, 뇌물, 청탁 등 후진국형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이나 예산낭비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로 국회, 감사원 등 외부통제장치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으나 감사원의 감사인력의 한계, 감사대상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체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와 낭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는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문제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한 자체감사기구의 장점을 살리면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독립성·전문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위사업분야에는 국가기관인 방위사업청, 연구기관으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으며 국가방위력개선사업, 무기체계획득, 국방기술기획 및 품질경영, 무기체계연구개발 등 국가방위력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K계열 무기체계<sup>1)</sup>와 일반군수품의 품질문제로 인하여 군수품 성능과 품질보증 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 자체감사기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과학기술은 18~24개월마다 기술혁명이 발생하고, 기술반감 주기가 3~4년으로 단축되는 등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쟁의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가져와 방위사업분야의 각 기관은 최첨단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획득, 품질보증,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도 과거의 합법성 감사에서 벗어나 정책 및 사업관

---

1) K계열(K-1, K-2, K1A1, K-21, K-9, K11 등) 무기체계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복합소총 등을 말한다.

리 전반에 대한 성과감사로의 변화가 불가피 하며 국방과학기술 발전 및 행정변화의 속도에 비례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역량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감사환경의 변화 속에서 방위사업분야, 정부기관 및 외국 주요 국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자체감사기구의 문제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방위사업분야를 크게 보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산하 연구기관까지를 포함 할 수 있으나 기관별 특성(정부기관, 군부대 등), 보안 등의 이유로 연구자료의 획득·접근이 일반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비하여 어려운 까닭에 국방획득전문기관인 방위사업청과 그 산하 연구기관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 및 정부기관 자체감사 운영 실태에 대하여 설문조사 및 자체감사기구운영 사례(Best Practice) 등 기 선행 연구된 자료를 통해 자체감사기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제 2 장 자체감사제도의 고찰

### 제 1 절 감사제도의 개념

#### 1. 감사(監査)의 의의

감사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도로 발전되어 왔으며, 감사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우나 공적자원을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개인이나 기관이 그 업무를 위임한 자에게 그 집행내역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고해야 하는 책임(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그 적부에 대한 여부를 검토 또는 비판하는 행위<sup>2)</sup>로 보기도 하며, 경제활동 및 사상에 대한 어떠한 주장과 미리 설정된 평가기준과의 일치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주장에 관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인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sup>3)</sup>이라고도 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계검사(audit)는 어떤 조직체의 재정활동과 그 수지에 관하여 회계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공권을 가지고 확인·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장부 기타 기록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행위이며, 직무감찰(inspection)은 피감사기관과 그 소속직원의 직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를 조사·검토하는 행위<sup>4)</sup>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정의로 볼 때 감사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거 임명된 감사인이 어떤 조직체의 운영·활동이나 회계 등 부여된 감사범위에서 합법성 등 판단 기준하에 독립적으로 제반 정보·자료·기록 등을 수집·평가·확인·분석하여 사실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지를 제3자가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평가한 후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체계적 과정<sup>5)</sup>이라

2) 황현성(2006), 「자체감사기능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

3) 양대우(2009), 「공기업 자체감사의 실효성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4) 기획예산처(2007),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매뉴얼』, 서울 : 기획예산처, p. 7.

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감사의 개념은 환경변화에 따라 감사 방향, 목적 등 감사의 패러다임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 감사는 회계사무의 적법성 내지 합법성 위주의 감사였다면 최근의 현대적 감사방향은 경영환경이 성과주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감사의 패러다임도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중시하는 성과중심의 감사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공공 감사에서도 1960년대까지 전통적 감사 기법에 따라 회계사무의 적법성 확인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소극적인 목적이외 공공자원의 획득 및 사용 과정의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따지고 정책 및 주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sup>6)</sup>

## 2. 감사의 기능

감사는 정보내용이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합되는 내용인가를 판단하고 그 정보의 질(質)을 평가하여 검증하는 기능을 통하여 조직과 그 구성원의 활동이 주어진 기준에 부합되도록 사후적 통제기능과, 사전 예방적 지도기능을 수행<sup>7)</sup>하기도하며 정책결정 능력의 향상, 자원의 합리적 이용, 책임행정의 확보, 공직기강의 확립 등의 기능<sup>8)</sup>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 1) 사후적 통제기능

감사는 어떤 사실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지를 제3자가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과정으로 어떤 행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변상이나 시정, 개선 등의 사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동시에 비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간접적 효과도 아울러 갖고 있다.

5) 감사교육원(2009), 『2009년 공공기관 감사실무과정교재』, 경기 : 감사교육원, p. 2.

6) 감사교육원(2010), 『2010직무교육교재』, 경기 : 감사교육원, p. 2.

7) 감사교육원(2009), 전계서, p. 3.

8) 황현성, 전계논문, p. 12.



## 2) 사전적 예방 및 지도기능

오늘날의 감사는 이미 저질러진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사전적 예방 및 지도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의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사후에 문제되었을 경우 엄청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설계단계나 평가단계 등 주요 단계부터 사전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업을 사전에 바로 잡을 수 있다.

## 3) 정책결정 능력의 향상

감사는 정부의 활동이 합법적, 경제적 및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조사·검토하여 문제점이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책결정이나 기존 정책의 수정, 개선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여 전체적으로 국가의 합리적 정책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 4) 자원의 합리적 이용

자원의 경제적이고 효율적 이용의 확보를 위한 필수기능으로서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능률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이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자원을 비능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한다.

## 5) 책임행정의 확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 등 제 자원을 여러 가지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재원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제반활동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감사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의 제반활동의 합법성 및 효율성을 감사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6)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성 제고

감사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정·낭비·남용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거나 시정시키고 예방·지도를 통하여 공직자의 비위 또는 부당처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그 외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를 점검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게 하며, 기관이 대외에 공표하는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공시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는 기능도 있다.

### 3.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체계<sup>9)</sup>

우리나라의 공공감사는 감사원 감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로 구분되며, 법적근거는 감사원 감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는 독립기관의 외부감사로 감사원법에 조직과 권한, 감사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체감사는 해당 기관(단체)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체계의 일환으로 기관 내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이나 기관내부의 규정인 정관 등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그림 2-1>과 같다.

| 공 공 감 사                     |                                        |                                              |
|-----------------------------|----------------------------------------|----------------------------------------------|
|                             | 감사원 감사                                 | 자체감사                                         |
| 법적근거                        | 헌법, 감사원법                               | 행정감사규정, 정관 등                                 |
| 기구성격                        | 독립, 국가최고감사기구                           | 기관장 소속, 비독립 기구                               |
| 기능/임무                       | 공공부분 외부감사<br>국가전체 행정개선<br>회계질서/공직기강 확립 | 기관 소관업무 내부감사<br>소관업무에 대한 개선,<br>기관장 지휘감독 지원  |
| 감사인력                        | 8백 여명                                  | 5천여명(공공기관 미포함)                               |
| 감사대상<br>(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기관 : 6.6만개<br>예산 : 880조원<br>직원 : 124만명 | 자체감사기구별로 상이<br>(소관 지휘감독 범위내의 대상<br>기관 예산/인력) |

<그림 2-1> 공공감사체계도

9) <http://www.pasa.go.kr/pasa.html>(감사원 공공감사 홈페이지)

## 제 2 절 자체감사의 개념

### 1. 내부감사와 외부감사

감사는 감사 주체가 내부인 또는 외부인이나에 따라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는 주로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공정한 감사를 기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반면 내부감사는 조직내부의 직원이나 임원에 의해 실시되는 감사로 내부 감사인협회<sup>10)</sup>(IIA,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는 내부감사를 “조직 전체 운영을 개선하고 가치를 부가하기 위해 설계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증과 컨설팅활동이다.”<sup>11)</sup>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감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내부통제가 있는데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면 내부통제는 건전한 재무구조나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내부감사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내부통제는 조직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는 조직 내·외적 요인을 관리하는 절차이며 대응책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는 “조직의 리스크가 용인할 만한 수준까지 관리되고 있는 지와 관련하여 조직의 관리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점검을 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sup>12)</sup>이라 말할 수 있다.

### 2. 자체감사

#### 1) 자체감사의 정의

감사 주체가 내부인 또는 외부인에 따라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될 수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감사원 감사는 일반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실시되는 감사와 다른 전형적인 외부감사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내부감사는 감사의 주체가 감사대상기관의

10)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 The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는 1941년에 설립된 범 세계적인 감사전문연구기관임

11) 허명순(2010),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방안」, 서울 : 감사연구원, p.14

12) 김홍률(2010), 「내부통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2010 연구논문집』, 경기 : 감사교육원, pp. 63~64.

내부에 속한 경우로 자기조직을 감사하는 것으로서 정부기관의 자체감사나 기업의 감사에 의한 감사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가 이에 해당되며 자체감사의 법적근거는 행정감사규정 및 각 기관의 정관 등으로 기관장 소속 또는 비독립기구 형태로 설치되어 기관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개선 및 기관장 지휘감독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자체감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체감사는 내부감사 이외에 이해관계자 감사에 해당되는 소속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자체감사의 필요성<sup>13)</sup>

국가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모든 감사대상기관을 직접 감사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만약 외부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모든 감사대상을 감사할 수 있다면 자체감사기구의 존재 의의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정치·경제·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복잡하고 다기능화 됨에 따라 행정의 역할도 예산의 증대와 함께 커지고 있으며, 행정절차, 규정 또한 복잡해짐에 따라 내부사정을 잘 아는 자체감사기구에 의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통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3) 자체감사의 특징<sup>14)</sup>

자체감사는 각급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율적 작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자체감사는 외부로부터 감사가 잘못을 지적해 주기 전에 자율적으

13) 감사원(2008), 『자체감사기구 운영 표준 모델』, 서울: 감사원, p. 98.

14) 김명수(2007), 『자체감사론』, 서울: 대영문화사, p. 16.

로 먼저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제도이다.

둘째, 자체감사의 초점은 사후적 처벌 보다는 사업이나 업무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개입하여 사후에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기능에 있다.

셋째, 자체감사는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또는 시행과정에서 잘못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 4)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감사 주체에 따라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법에 따라 서면감사, 실지감사 등으로 구분된다. 감사시기에 따라 사전감사, 사후감사로 구분되며, 감사판단기준에 따라 합법성(재무)감사와 성과감사 등으로 구분된다. 감사범위에 따라서는 포괄적(종합)감사와 특정(부분)감사로 구분 할 수 있으며 감사 주기에 따라 정기(일반)감사, 수시(특별)감사로 구분 할 수 있다.<sup>15)</sup> 또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표 2-1>과 같다

| 종 류  | 내 용                                                                  |
|------|----------------------------------------------------------------------|
|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
|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
|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표 2-1> 자체감사의 종류

15) 감사교육원(2009), 전제서, pp. 6~8.

### 3.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논의

자체감사기구의 활성화 또는 강화방안의 하나로 독립성 및 전문성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관리구조, 조직, 인사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독립성·전문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보았으며<sup>16)</sup> 자체감사의 활성화 방안으로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감사 요원의 전문화 등<sup>17)</sup>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체감사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으로 ①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미흡 ②기관장의 의지 부족 ③감사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등<sup>18)</sup>을 들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자체감사기구가 활성화 내지 강화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1)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감사의 독립성이란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각 기관이 외부기관 뿐만 아니라 자체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수행할 때 실질적인 독립성을 가지는 것이며, 자체감사요원이 기관의 정책, 절차, 운영 실태를 검토할 때 편견 없이 전문가적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를 말한다.<sup>19)</sup> 자체감사의 독립성에 대하여 ①감사업무수행상의 독립성 ②감사요원의 신분상 독립성 ③재정상의 독립성을 제시하기도 한다.<sup>20)</sup>

한편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방안으로 첫째, 자체감사기구 독립성의 인식 제고 및 자체감사규정의 제정이다. 각 기관장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이 전반적으로 순기능을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즉, 감사지적사항이 기관장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 대한 책임성과 반응성을 제공하는 장치라는 인식, 기관의 신뢰성과 위기관리

16) 허명순, 전계논문, p. 42.

17) 강경규(1999),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논총 제18집』 서울 : 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pp. 193~194.

18) 감사연구원(2009), 『자체감사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서울 : 감사연구원, p. 22.

19) 김명수, 전계서, pp. 86~87.

20) 이주희(1998),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관의 독립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0권 제3호』, pp. 29~44.

를 점검하는 장치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자체감사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자체감사요원의 독립성 여건 조성방안이다. ①감사요원이 감사사항과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외부압력과 영향으로부터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②감사요원의 선발, 재직, 평가시스템, 편익(benefit)을 주는 것으로 감사요원의 선발 시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명하는 방안, 감사요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의 근무 보장 방안, 근무평가 기준을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 근무평정우대 방안, 전출시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감사결과 보고서를 각 기관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명문화하는 것이다.<sup>21)</sup>

내부감사인협회와 선진국들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①내부감사기구는 기관장 산하에 위치하고 감사위원회나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하고 ②감사기구의 장은 수감부서의 외부에 위치해야 하고 ③감사범위나 활동, 자료의 접근법 등에 있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④내부감사 담당자는 최고관리층 및 이사회(또는 위원회)와 정기적인 회의를 가질 것과 ⑤감사책임자의 신분보장 등을 권고하고 있다.<sup>22)</sup>

## 2)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자체감사의 전문성이란 감사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의미하며, 여기서 말하는 전문지식이란 실질적 분야별 감사대상 업무의 내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감사 기법·방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감사인의 실무 경험은 감사에 실제로 참여하여 쌓은 경험을 말한다.<sup>23)</sup> 내부감사인협회 기준에 따르면 내부감사인은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기타 능력(Competency)을 지녀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1) 김명수, 전제서, pp. 99~100.

22) 허명순, 전제논문, p. 19.

23) 김명수, 전제서, p. 103.

전문성 확보방안으로는 첫째로 직원 충원 시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자체감사의 인력 체계는 감사의 질을 결정하므로 자체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로 교육 및 훈련강화를 들고 있으며 셋째로 인력의 재배치, 외부전문가 및 자체감사위원회 등의 활용을 들고 있다.<sup>24)</sup> 한편 감사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감사책임자 및 감사담당자에 대한 자격조건·임용절차 개선, 감사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강화, 감사자격증제도에 대한 검토 등을 들고 있다.<sup>25)</sup>



---

24) 김명수, 전계서, pp. 113~114.

25) 허명순, 전계논문, pp. 78~85.



## 제 3 장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

### 제 1 절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

우리나라의 방위사업분야 관련 기관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등 많은 기관이 있으나 이중에서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물자조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방위사업청 및 산하 연구기관으로 한정하여 이들 조직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산하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를 두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자체감사전담기구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기품원과 국과연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의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3개 기관 모두 방위사업 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관성격, 임무·기능 등이 상이함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대상·범위·인원 등에 있어 차이점도 있다. 특히 방사청의 감사기구는 방사청 내부기관은 물론 산하연구기관까지 감사대상이 됨에 따라 많은 인원의 감사인력 및 다방면의 감사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방위사업분야 3개 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국방의 안보와 관련된 사항들로써 자료 획득이 쉽지 않아 방사청의 통계연보, 감사연구원의 연구자료, 실 운영사례, 각 기관의 감사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각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 1. 방위사업청 자체감사기구

##### 1) 임무 및 기능<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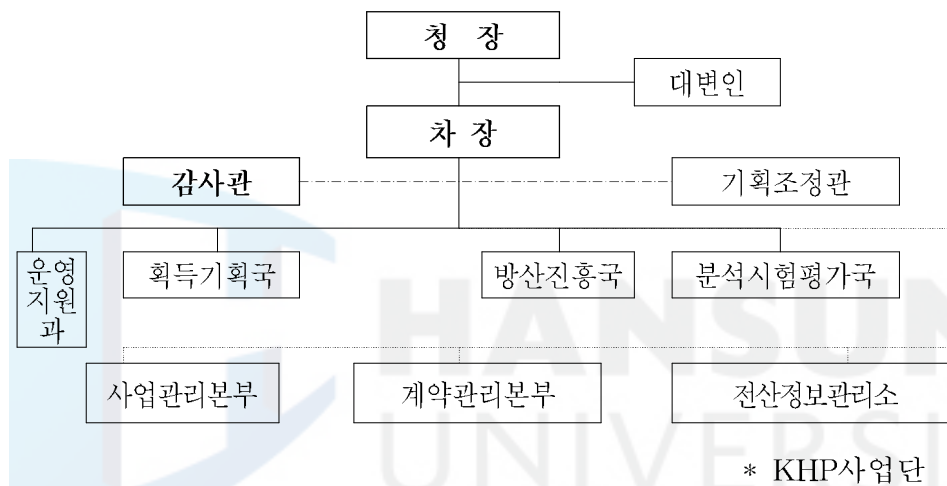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물자조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방분야의 조직 및 의사결정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최적의 무기체계

26) 방위사업법(법률 제10218호)

를 적기에 경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국방부 산하 외청으로 출범하였다. 주요사업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품조달 및 방위산업육성 등이다.

## 2) 조직

방사청은 크게 청본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전산관리소로 구성되며 별도 조직으로 KHP사업단<sup>27)</sup>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기품원과 국과연이 있다. 조직은 <그림 3-1>과 같으며 감사기구는 차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감사기획과, 획득감사과 및 고객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 방위사업청 조직도

## 3) 인원현황

방위사업청 직원은 공무원 및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9월 말 기준 1,597명이다.

27) KHP사업단은 한국군의 노후헬기 대체와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2004년 1월 국방부 산하기구로 발족하여,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으로 소속을 변경,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구이다.

#### 4) 자체감사기구 현황<sup>28)</sup>

##### (1) 독립성

###### ① 자체감사기구 설치

방사청의 감사기구는 차장(부기관장) 아래에 직속으로 설치되어 감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감사기획과, 획득감사과 및 고객지원센터로 구분하여 감사, 감찰 및 고객지원 등으로 사무를 분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확정권이 기관장에게 있어 실제로는 청장의 의사결정 보좌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관련 규정은 방위사업법 행정감사규칙(훈령 제102호),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훈령 제106호), 음부즈만 운영지침(훈령 제103호), 방위사업민원사무처리규정(훈령 제104호), 청렴마일리지운영지침(2010-9호) 등이 있으며 부서별 수행업무를 살펴보면 감사기획과에서는 직무감찰·공직기강, 청렴·부패방지, 음부즈만 제도 운영 등을 수행하며, 획득감사과에서는 방위력개선사업, 방산원가·회계감사, 산하기관감사를 수행하고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민원사무 총괄관리, 국내외 조달원 등록 및 민원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② 감사기구장의 자격과 임용

감사기구의 장 임용에 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감사관 직위는 부처자율형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임기제한이 없는 공개공모형태로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선발·임용되고 있다. 응모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고위공무원 2년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상당 2년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의 3급 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이다.

---

28) 방위사업청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자체감사기구운영사례연구』, 『방위사업청 자체감사기구운영사례』  
(출처: <http://www.pasa.go.kr/pasa.html>) 및 감사관련 규정, 2010년도 방위사업청 자체감사기구 운영조사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③ 감사기구장의 권한과 신분보장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요원 인사 시 추천 및 사전협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개별감사계획 결재권 및 일상감사결과에 대한 확정권이 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2~5년간 임기가 보장되어 있다. 감사관의 직위는 고위공무원 “나”급에 해당되어 감사대상기관인 사업관리본부장(육군소장 “가”급 상당),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가”급) 등 피 감사기관의 기관장 직급이 높아 독립적 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 (2) 전문성

### ① 감사담당자의 임용과 우대

감사관실의 공석 직위를 공개하고 타 부서의 근무자 중 전보대상자들이 지원하면 인터뷰(비공식)를 실시한 후 보직심의를 거쳐 인사발령에 의해 충원한다. 선발대상은 방위사업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상훈법」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감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임용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근무자세가 불성실하거나 청렴성이 결여된 자, 징계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전문 자격증 보유실태를 보면 34명 중 22명(65%)이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자격증별로는 사업관리사 8명, 원가관리사 6명, 국제무역사 5명, 국제사업관리사 2명, 시스템설계사 1명 등이다.<sup>29)</sup>

감사담당자의 우대에 관해서는 행정감사규칙의 제39조(특전)에 따라 경력평정 및 전보 시 우대를 하고 있다.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 후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

29) 이세도(2010), 『방위사업청 자체감사기구 운영사례』 자체감사기구운영 사례연구(Best Practice의 발굴)발표논문집, p. 37.

선 고려하며, 매월 감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② 감사담당자의 교육

감사담당자의 감사전문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감사담당자 1인 평균 0.8일이며 회계전문교육 이수 현황은 평균 1일이다.<sup>30)</sup> 감사부서로 인사발령이 보통 1~2일 전에 나기 때문에 인사 전 교육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감사 부서 발령 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시간이 부족한 편이며 주로 이용하는 교육기관은 감사원교육이다. 또한, 방사청의 보직관리 제에 따라 감사부서에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명 예정 직위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근무경력, 방위사업분야의 자격증(국방사업관리사, 무기체계방위사업관리사 등) 또는 학사이상(국방관리, 무기체계, 사업관리, 방위사업)의 학위소지자, 담당급은 분석평가과정, 과·팀장급은 방위사업관리자 정책과정, 국·부장급은 고위관리자 과정 이수자 등 3가지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자가 보직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해당분야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③ 외부 전문가의 참여 및 활용

방사청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전문 옴부즈만 제도를 법제화하여 운영 중이다. 옴부즈만제도는 자체감사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며 외부전문가(전직 감사원 감사관, 변호사 등)로 구성되며,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사항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방사청장에게 시정 및 감사를 요구한다.

### (3) 협력성(협력감사, 정보공유)

방위사업청은 감사원에 대한 자료제공과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협

---

30) 2010년도 방위사업청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조사표(전문교육이수현황)

조와 감사결과 및 자료에 대한 감사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감사방법, 감사기법 등에 대해서는 거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원과 인적 교류도 적은 수준이다.

#### (4) 감사활동

감사계획수립은 상향식(bottom-up) 체계로 감사담당자별 감사사항을 발굴하여 각 과별 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국장 주관하에 심의하여 감사대상을 결정한 후 과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감사계획에는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종류 및 감사 사항, 감사방법, 감사 실시 방법, 감사 시기 및 기간, 감사요원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 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 업무는 전산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e-감사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주요 방위력개선사업을 집중 모니터링 하는 등 전산감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감사로서 일상감사, 자발적 클리닉감사, 주요단계감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감사 실시 현황<sup>31)</sup>은 <표 3-1>와 같다.

(단위 : 건)

| 연 도  | 계   | 주요단계<br>감사 | Clinic<br>감사 | 시스템<br>감사 | 특정/민원<br>감사 | 일상감사 | 기강감사 등 |
|------|-----|------------|--------------|-----------|-------------|------|--------|
| 2007 | 97  | -          | 4            | -         | 33          | 18   | 42     |
| 2008 | 305 | 27         | 9            | 2         | 17          | 211  | 39     |
| 2009 | 78  | 36         | -            | 2         | 15          | 19   | 6      |
| 총 계  | 579 | 63         | 22           | 4         | 74          | 251  | 165    |

<표 3-1> 주요감사 실시 현황

31) 방위사업청(2010), 『방위사업청 통계연보』, 서울 : 방위사업청, p. 220.

## 2. 국방기술품질원 자체감사 기구

### 1) 임무 및 기능<sup>32)</sup>

기품원은 1981년 7월 1일 최초 국방품질검사소로 창설된 이래 2006년 2월 2일 방위사업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국방품질관리소<sup>33)</sup>의 기능을 승계하고 국방기술기획·기술정보관리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방사청 출연 전문연구기관인 기품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설립되었다. 그 임무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기술기획·연구와 기술정보의 확보·유통·관리, 품질보증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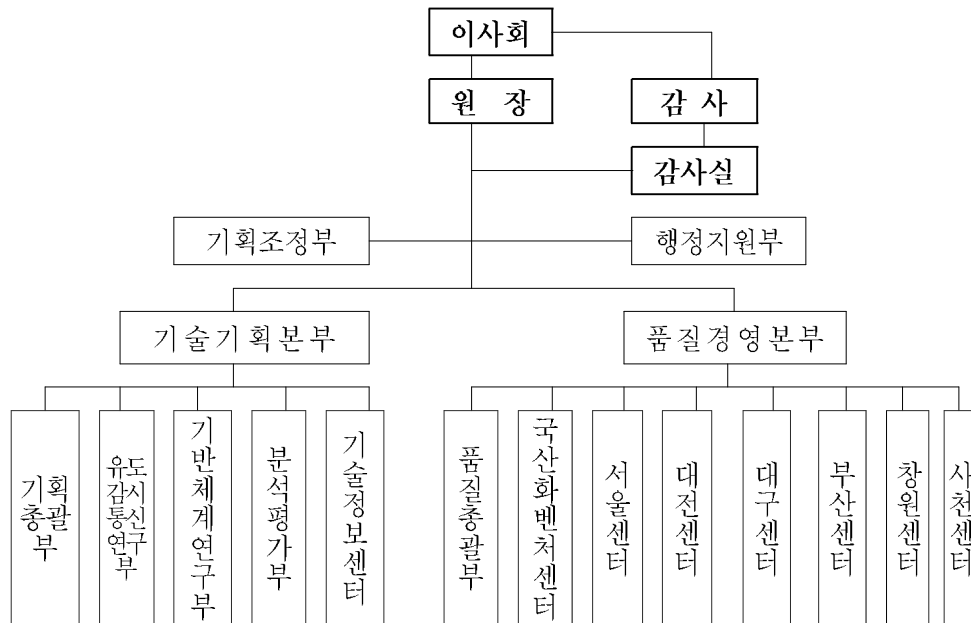
주요 사업으로는 국방과학기술의 기획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업무 지원,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 수행결과 평가 등에 대한 지원,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통합관리,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연구 등이다.

### 2) 조직

기품원 조직은 원 경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 본부,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작성 등 기술기획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기획본부, 군수품에 대한 품질경영활동을 수행하는 품질경영본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품질경영본부의 경우 각 지역전문센터를 두고 있다. 감사조직은 별도 감사조직으로 편제되어 원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다. 세부 조직도는 <그림 3-2>와 같다.

32) 국방기술품질원 정관(2011.6.14)

33) 국방품질관리소는 국방기술품질원 창설직전 기관명칭임.



<그림 3-2> 국방기술품질원 조직도

### 3) 인원현황

기품원의 인원 구성은 직원 및 현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9월 말 기준<sup>34)</sup> 507명이다.

### 4) 자체감사기구 현황<sup>35)</sup>

#### (1) 독립성

##### ① 자체감사기구 설치

기품원의 자체감사기구는 기관장 아래에 직속으로 편제되어 감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비상임감사이다. 자체감사 대상 기관은 원 본부, 기술기획본부, 품질경영본부로 구분되며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인력은 6명으로 전체인력 507명을 고려 시 감사대상 대비 순수 감사

34) 2010년 자체감사기구 운영 조사표(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의 인원 현황 작성 기준 일을 반영하였다.

35) 국방기술품질원의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감사규정, 감사요령 등 관련규정 및 현 운영실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인력 비율은 약1.2%로 적정<sup>36)</sup>편이다.

감사관련 규정에는 감사규정, 감사요령,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 행동강령 등이 있다.

## ② 감사기구장의 자격과 임용

감사기구의 장 임용에 대해선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사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궐위될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하게 되어 있다.

감사의 임용 절차·자격에 대해선 별도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임하며, 자격요건은 포괄적 자격요건으로 기본역량 2가지, 고유역량 3가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필수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방위사업분야 감사 등을 고려하여 군사 보안업무를 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으로 되어있다. 구체적 자격 요건으로 경력요건은 학력기준 및 경력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적 요건으로 방위산업이나 과학기술 분야 또는 다른 분야 기관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그 수상경력, 감사 업무경력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감사 직무 수행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자격요구 인정기준은 모든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구성하는 학력기준, 경력기준, 실적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경력 또는 실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세부 조건은 <표 3-2>와 같다.

또한, 자체감사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자인 감사담당부서장은 회계 및 감사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품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인사발령에 의해 임명하며 별도의 임기는 없고 순환보직에 따르고 있다.

자체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원의 임명 시 자격요건을 살펴본 결과

36) 감사원의 2010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계획의 감사인력 수 측정방법에 의하면 감사대상 인원 수 대비 순수감사 인력의 비율이 0.8% 이상에 대하여 최고 점수 4점을 부여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감사인력 비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자격기준이 감사관련 구체적인 자격조건이 아닌 일반 조건으로 되어 있어 자격요건을 구체화 하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감법」에서도 공공기관 감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공운법」을 적용토록 하여 그 자격 요건을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감사관련분야 경력 또는 자격증 보유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 구 분                            |          | 자 격 기 준                                                                                                                                                                                                                                                                                                                                                                                                                                                                                                                                                                                                                                                                                                                                                                                                                                                                                                                                                                                                                                                                                                  |
|--------------------------------|----------|----------------------------------------------------------------------------------------------------------------------------------------------------------------------------------------------------------------------------------------------------------------------------------------------------------------------------------------------------------------------------------------------------------------------------------------------------------------------------------------------------------------------------------------------------------------------------------------------------------------------------------------------------------------------------------------------------------------------------------------------------------------------------------------------------------------------------------------------------------------------------------------------------------------------------------------------------------------------------------------------------------------------------------------------------------------------------------------------------------|
| 포괄적<br>자격<br>요건                | 기본<br>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실천 책임감 및 공직윤리의식</li> <li>• 경영환경 혁신·개혁 능력</li> </ul>                                                                                                                                                                                                                                                                                                                                                                                                                                                                                                                                                                                                                                                                                                                                                                                                                                                                                                                                                                                                           |
|                                | 고유<br>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업무를 위한 전략적사고 능력과 업무추진 능력</li> <li>•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li> <li>• 업무의 정확한 분석·판단능력</li> </ul>                                                                                                                                                                                                                                                                                                                                                                                                                                                                                                                                                                                                                                                                                                                                                                                                                                                                                                                                                                 |
| 필수 요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상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li> </ul> </li> <li>• 기타필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 보안업무를 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li> </ul> </li> </ul>                                                                                                                                                                                                                                                                                                                                                                                                                                                                                                                                                                                                                                                                                                                                                                                                                                        |
| 구체적<br>자격요건<br>(경력 또는<br>실적요건) |          | <p>가. 경력 요건</p> <p>① 학력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학위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군인)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li> </ul> </li> <li>○ 박사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군인)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li> </ul> </li> </ul> <p>② 경력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준장 이상 장관급장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국방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령 이상 장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li> <li>○ 민간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 방위산업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3년 이상 또는 이사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li>- 국방, 방위산업 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li> </ul> </li> </ul> <p>* 민간경력은 정부 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대학(전문대학), 민간기업(비상장 포함), 시민단체, 프리랜서 등 개인활동 포함</p> <p>나. 실적 요건</p> <p>방위산업이나 과학기술 분야 또는 다른 분야 기관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그 수상경력, 감사 업무경력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감사 직무 수행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p> |

<표 3-2> 감사 자격요건

### ③ 감사기구장의 권한과 신분보장

감사규정에 의하면 감사는 각부서의 임무 수행상태, 공직기강, 사기, 업무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상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자(부서장, 감사담당자)의 인사 시에는 감사의 의견을 들어 행하도록 되어 있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는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기관의 순환인사와 연계하여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감사기구장의 인사에 대한 의견 반영상태가 미흡한 실정이다.

자체감사기구의 장(長)인 비상임 감사는 현재까지 예비역 준장 출신으로 임명되었으며, 감사보좌역인 감사담당부서장인 감사실장은 책임급으로 피감사기관과 동등한 직급자가 임명되어 직급 등으로 인하여 감사수행 시 문제점은 없다.

## (2) 전문성

### ① 감사담당자의 임용과 우대

감사담당자에 대한 임용은 감사담당부서장과 동일하게 감사의 의견을 들어 원장이 행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으며, 자격요건은 회계 및 감사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품원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5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및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인사 관련 규정에 의거 평가 결과가 불량한 자는 감사담당자로 임용될 수 없다. 또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 및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급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등급 부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화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정액의 감사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기관장 지침에 의해 연봉책정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최하 “A”등급 이상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자체기관의 순환계획 인사에 의해 감사담당자의 전·출입이 되기 때문에 감사 경험 및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향후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사부서 근무자에 대한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 ② 감사담당자의 교육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은 주로 감사원을 이용하여 감사기본과정, 회계과정 등의 교육을 받고 있으나 회계과정은 주로 2년차에 실시하여 감사실 평균근무기간 2~3년을 고려 시 교육시기에 늦은 감이 있으므로 전입 즉시 감사기본자질 습득차원에서 감사기본교육 및 회계과정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

## ③ 외부전문가의 참여 및 활용

외부전문가의 참여 및 활용 실적은 없으나 감사역량 강화를 통해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고 업무의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예정이다.

## (3) 협력성

감사원 또는 하급기관의 요청·의뢰한 수탁 또는 위탁감사, 합동감사 실적 등은 없으나, 감사원에 감사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해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을 감사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4) 감사활동

감사활동은 법규, 감사 또는 원장의 지시·의뢰에 의거 각부서의 임무 수행상태, 공직기강, 사기, 업무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 및 점검하는 사항으로 감사담당자의 내부 활동은 직무 수행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 복무의무위반 및 비위발생의 우려요소, 안전 및 공직기강저해요인 등을 제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방문 형태의 예방 및 제도개선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일상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대상에 따라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종합감사는 부서별 분장된 업무 및 회계처리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부분감사는 업무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다. 업무감사는 제반 업무사항에 대해 운영의 적부,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감사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감사는 금전, 물품 및 자산 등 관련 회계에 관한 업무처리 적부에 대한 감사다.

감사계획은 감사 및 원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며, 감사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업무종합감사는 부서별로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 계획에는 연간 감사계획, 감사의 목적, 중점, 방침 및 필요성, 감사 대상 부서,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감사 실시방법, 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감사담당자, 감사분야별 세부 착안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내부망 및 문서로 사전 감사계획을 공지하고 있다.

그 외 감사계획과는 별도로 주요업무에 대해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대상은 원규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기구의 신설, 개폐 및 정원 책정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연도별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과 집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결산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세부 대상은 <표 3-3>과 같다. 그러나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집행 등에 대하여 사전 감사를 실시하여 회복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단계가 명확하게 규정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일상감사 시기는 사업의 착수, 결과 및 주요변경 사항 등 주요 단계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실시토록 관련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비슷한 내부통제의 하나로 방위사업청의 주요단계 감사가 있는 데 예를 들면 핵심기술사업의 경우는 과거에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제안서 평가 시 참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사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1. 원규(院規)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기구의 신설, 개폐 및 정원 책정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사업계획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과 집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구직, 관리직, 기술직 직원의 채용
6. 사업 및 예산 집행 실적 보고 사항
7.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8. 결산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체결 및 예산집행상의 주요 변경사항.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체결 및 예산 집행 사항
  - 나.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 다. 계약에 의하여 지출하는 선급금
  - 라. 조달청으로부터 구매대금과 단가 계약에 의한 구매 대금
  - 마. 예금의 이자
10. 원 운영 또는 사업관련사항 등 중 원장 결재로 시행하는 업무수행상의 지침 및 방침이 되는 사항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사항

<표 3-3> 일상감사 대상

또한, 업무자가평가체크리스트(CSA : Control Self-Assessment)를 작성·배포하여 업무수행 담당자가 자가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상의 문제점을 사전 파악·조치하고 점검 결과는 자체감사 시 활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활동비 사용, 업무수행 사항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 3. 국방과학연구소 자체감사 기구

#### 1) 임무 및 기능<sup>37)</sup>

국과연은 국방에 필요한 병기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과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및 시험 등을 담당하여 국방력의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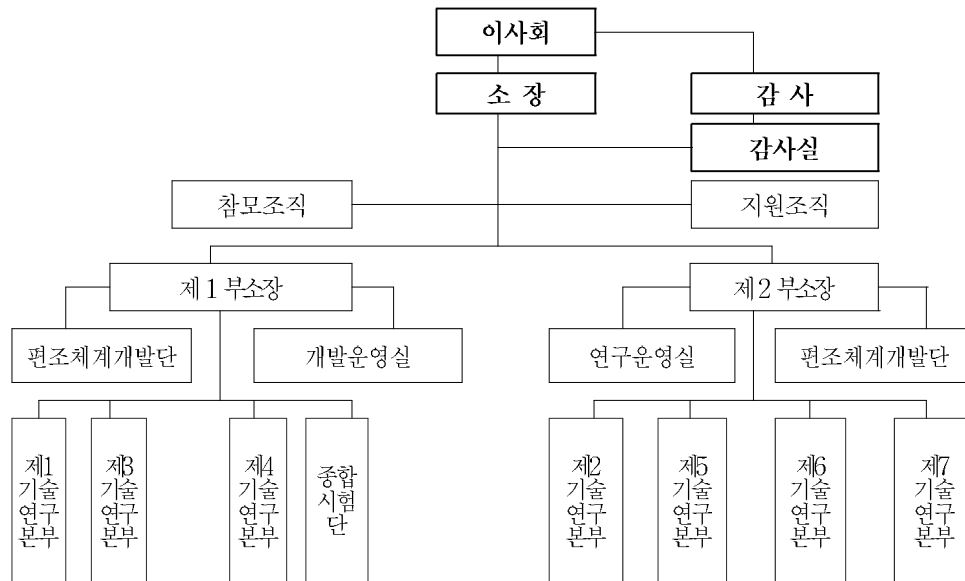
주요 사업으로는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대한 기술적 조사·연구·개발과 이에 관련한 계통공학, 인간공학, 그 밖의 과학기술의 조사·연구, 병기·장비와 군용 물자의 제식 및 규격의 조사·연구,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관련된 각종 제자원, 조직, 제도 및 운영의 분석·연구, 병기 및 병기장비의 시험제작을 위한 설계 및 설명서의 작성·검토와 시험제작품의 기술시험, 각종 병기 및 장비의 성능시험, 병기·장비와 그 밖의 군용 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또는 지원 등이 있다.

#### 2) 조직

국과연 조직은 소장, 제1·제2 부소장 및 소속 부서, 참모조직 및 지원조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기구인 감사실은 소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다. 세부 조직도는 <그림 3-3>과 같다.

37) 국방과학연구소법(법률 제10215)





<그림 3-3> 국방과학연구소 조직도

### 3) 인원현황

국과연의 연도별 인원 현황을 보면 2007년도 2,434명, 2008년도 2,451명, 2009년도 2,401명이며 2010년 9월 말 기준 인원은 2,517명이다.

### 4) 자체감사기구 현황<sup>38)</sup>

#### (1) 독립성

##### ①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국과연의 자체감사기구인 감사실은 기관장 아래에 직속으로 편제되어 감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상임감사이다. 자체감사 대상 기관은 참모부서 및 지원부서, 사업부서(제1·제2부소장 소속)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인력은 총 6명으로 감사대상인력 2,517명(2010년 9

38) 자체감사기구 현황은 국방과학연구소법·시행령, 감사규정 등을 참고 하였다.

월 기준) 대비 0.2%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원 대비 순수감사인력 권장 비율인 0.8%<sup>39)</sup>에 훨씬 못 미치는 감사인력을 유지하고 있어 감사인력이 매우 부족한 편이므로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사관련 규정은 업무감사규정, 업무감사실시요령, 일상감사규칙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2010년 7월에 감사규정으로 통합하여 감사규정,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자체감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 ② 감사기구장의 자격과 임용

감사기구의 장은 공모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고 궐위(闕位)되었을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 예비역 장성(將星)이 임명되고 있다. 감사기구의 장 공모 시 자격요건은 예비역장성으로서 국방정책 분야 유경험자, 책임감이 강하고 사생활에 문제점이 없는 자 등으로 되어 있다.

## ③ 감사기구장의 권한과 신분보장

감사기구의 장은 국방과학연구소법 및 정관에 의해 연구소의 사업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감사규정에 의해 감사의 직무 수행 및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기구의 장인 상임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감사보좌역인 감사담당부서장의 경우는 순환보직과 연계하여 인사발령에 의해 임면, 전보 등이 실시되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상임감사는 통상 예비역 장성(將星)출신이 임명되어 감사 대상 기관장의 상위 직급 등으로 인한 감사 수행에 문제점은 없다.

---

39) 감사원의 2010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계획의 감사인력 수 측정방법에 의하면 감사대상인원 수 대비 순수감사 인력의 비율이 0.8% 이상에 대하여 최고 점수 4점을 부여토록 되어 있다.

## (2) 전문성

### ① 감사담당자의 임용과 우대

감사담당자(감사실장, 감사담당자)의 자격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기타 감사담당부서장이 감사담당 직원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감사 및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소장이 인사발령으로 임용하고 있다.

감사담당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소규(所規)에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감사업무에 필요한 감사직무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재 감사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사사항은 감사와 협의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에 우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감사담당자가 2년 이상 근무 후 전보될 경우 반드시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강제규정화 하였으나 운영상에서는 일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다.

### ② 감사담당자의 교육

감사담당자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로 감사원 등 외부교육기관을 활용하고 있으나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③ 외부전문가의 참여 및 활용

외부전문가의 참여 및 활용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협력성

감사원 또는 하급기관의 요청·의뢰한 수탁 또는 위탁감사, 합동감사 실적 등은 없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해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을 감사원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 정보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 (4) 감사활동

감사범위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연구개발, 사업 및 재정 등 연구소 제반업무사항, 주무장관 또는 이사회가 지시하는 사항, 소장이 감사를 의뢰하는 사항,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종합감사는 연구소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합감사를 부분감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부분감사는 피감사 부서의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상부기관 지시사항, 소장이 감사를 의뢰한 사항,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소 소원(所員)의 복무의무 위반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업무 중 업무자체가 중요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사후감사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대상은 <표 3-4>와 같다.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되며 감사계획에는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범위 및 대상 부서,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감사 실시방법, 감사시기 및 방법, 감사시기 및 기간, 감사요원,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감사 실시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감사계획을 피감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및 소장에게 보고하고 사항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이사회, 방사청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1. 법령, 정관 및 소규(所規)의 제정과 이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기구의 신설, 개폐 및 정원의 책정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요 운영지침 및 방침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사업계획과 기타 주요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과 집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건당 1억원 이상의 수입 및 지출발의(본부 이외 지역 제외)와 건당 2억원 이상의 계약체결 및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예산의 집행실적 보고 사항
8. 재산의 처분 및 대여에 관한 사항
9. 결산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장, 감사가 사전 감사를 지시한 사항
11. 각 부서에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제외사항>

1. 통상적인 집행사항(급여, 세금, 공과금, 출장비 등)
2. 계약에 의하여 지출하는 선금금
3. 조달청 계약에 의한 구매대금과 단가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4. 대외적으로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

<표 3-4> 일상감사 대상

#### 4.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의 시사점

##### 1) 독립성

방사청의 경우는 감사기구가 부기관장(차장)직속으로 되어있으나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 결과의 확정권을 기관장이 갖고 있고 감사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기구의 장을 공개공모형태<sup>40)</sup>로 임용하고 있다. 기품

40) 공모형은 기관은 다를 수 있으나 공직내부에서 임용하는 것을 말하며, 개방형은 공직 내부 또는 외부(민간인)에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 및 국과연의 감사기구(기관장 직속으로 별도의 감사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기구의 장을 공개모집 형태로 모집하여 이사회 추천을 받아 주무기관장이 임명하고 있어 방위사업분야의 3개 기관 모두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방사청의 경우 독립성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선 현재의 감사기구를 기관장으로 직속시켜 위상을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감사기구의 장보다 수감 기관의 기관장의 직급이 높아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감사기구 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감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자 선발 시 감사담당자로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임명에 대한 추천(요구) 등이 인사권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 2) 전문성

방사청의 경우 임용 시 추천 및 사전협의를 통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감사수당 지급 등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수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 제고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감사 대상이 청 자체기관은 물론 산하 연구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어 계약, 사업관리, 품질경영 등 많은 분야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만큼 교육시간을 늘리고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등 전문성 제고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기품원 및 국과연의 경우도 성과평가 시 우대, 감사수당(국과연은 미지급), 전보 시 일부 개인 희망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하여 우대하고 있으나 그 우대 정도가 미흡하며 교육시간 또한 부족한 편이다.

감사의 성과는 감사담당자의 감사역량에 좌우된다고 본다. 따라서 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감사담당자의 일반적인 근무기간이 2~3년 정도인 점을 고려 임용 시 감사분야 유경험자 또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역량 소유자를 임용하여 교육과 훈련을 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성과평

가, 수당, 장기근속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 참여 및 감사자문위원회 설치·활용을 통하여 전문성을 보완 할 필요성이 있다

### 3) 협력성

자체감사의 효과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필요 시 대행·위탁·합동감사 및 감사인력에 대한 상호 지원이 필요하며, 감사결과 등에 대한 감사정보를 상호교환 할 필요성이 있다.

방사청의 경우 감사원과 원활하게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방위산업체 비리와 관련, 자체감사기구에는 업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 경찰 등과의 협력이 긴밀해 지고 있다. 기품원 및 국과연의 경우 역시 감사원 등과의 협력성이 다소 부족한 편이며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서 감사원에게만 감사결과 등을 일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감사에 관련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모든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각 기관들의 자체감사에 활용하고 감사원에서는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중복감사 방지 등 감사운영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4) 감사활동

방사청의 경우 연간감사계획의 결정권은 기관장에게 있지만, 개별 감사계획의 결재권은 감사기구의 장에게 있으며 감사결과에의 확정권은 기관장에게 있다. 감사 시에는 자체 제작한 감사편람 등을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는 공직기강에 한해서만 공개하는 등 업무 특성상 공개률이 낮은 편이다. 기품원 및 국과연의 경우 감사계획 및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자체감사결과는 내부망을 이용하여 관련부서 등에 공개하고 있으나 감사활동에 필요한 감사업무편람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의 품질제고를 위해서 감사매뉴얼 등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것으로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주요 운영 현황을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 구 분                               | 방위사업청                                                                                                          |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과학연구소                                                                                         |
|-----------------------------------|----------------------------------------------------------------------------------------------------------------|--------------------------------------------------------------------------------------------------|-------------------------------------------------------------------------------------------------|
| 감사기구편제                            | 부기관장직속                                                                                                         | 기관장직속                                                                                            | 기관장직속                                                                                           |
| 감사인력비율<br>(현원기준)                  | 3%<br>(43/1,597)                                                                                               | 1.2%<br>(6/507)                                                                                  | 0.2%<br>(6/2,517)                                                                               |
| 감사기구의 장<br>임용형태                   | 개방형<br>(감사관)                                                                                                   | 공채<br>(비상임감사)                                                                                    | 공채<br>(상임감사)                                                                                    |
| 감사책임자의<br>감사기구근무<br>경력            | 없음                                                                                                             | 없음                                                                                               | 없음                                                                                              |
| 감사결재권자<br>(계획/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장(중요사항)</li> <li>감사기구장(일반사항)</li> </ul>                               | 기관장                                                                                              | 기관장<br>• 감사기구장(일부)                                                                              |
| 감사책임자의<br>근무기간<br>(전임3인)          | 26.5개월                                                                                                         | 18개월                                                                                             | 31개월                                                                                            |
| 직급관계<br>(감사기구의장/<br>감사대상부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기구의 장<br/>- 고위공무원 “나”급</li> <li>감사대상부서장<br/>- 고위공무원 “가”급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기구의 장<br/>- 비상임감사</li> <li>감사대상부서장<br/>- 책임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감사기구의 장<br/>- 상임감사</li> <li>감사대상부서장<br/>- 책임급</li> </ul> |
| 감사담당자<br>충원 방식                    | 인사발령/외부충원                                                                                                      | 인사발령                                                                                             | 인사발령                                                                                            |
| 감사기구장의<br>인사권한<br>(임명 및<br>전보권행사) | 추천 및 사전협의                                                                                                      | 없음                                                                                               | 제청                                                                                              |
| 감사담당자의<br>감사부서 평균<br>재직기간         | 36개월                                                                                                           | 34개월                                                                                             | 30개월                                                                                            |
| 감사수당 등<br>우대 조치                   | 감사수당지급<br>인사가점부여                                                                                               | 감사수당지급<br>평가 시 우대                                                                                | 전보 시 희망보직                                                                                       |
| 감사전문교육<br>(현, 담당자)                | 감사과정(평균 0.8일)<br>회계과정(평균 1일)                                                                                   | 감사과정(총 15일)<br>회계과정(없음)                                                                          | 감사과정(총 3일)<br>회계과정(총 5일)                                                                        |
| 장기근속방안                            | 없음                                                                                                             | 없음                                                                                               | 없음                                                                                              |

<표 3-5>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 운영 현황<sup>41)</sup>

41)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은 3개 기관이 각각 작성한 『2010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을 참고로 하였다.



## 제 2 절 정부기관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제1절에서는 방사청 및 산하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운영 실태에 대해서 확인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정부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감사연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기초자료, 감사원의 자체감사 지원 및 심사를 위한 DB구축 목적으로 조사한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조사” 결과<sup>42)</sup>를 활용하여 독립성, 전문성, 협력성, 감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정부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를 정리하였다.

### 1. 독립성

#### 1) 자체감사기구 설치

'09.3월 기준 감사조직이 있는 행안부 562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설치 위치를 보면 기관장 소속은 5.3%(30개)에 불과하며 71%(399개)정도는 일반부서 소속이고 나머지 23.7%(133개)기관은 부기관장소속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체의 26.2%(147개)만이 감사전담기구를 두고 있으며 이중에서 기관장 직속의 전담조직은 5.3%(30개)이며 부기관장 직속전담조직은 20.8%(117개)이다. 일반소속부서의 경우에도 약 30%(168개)가 전담감사기구를 두고 있으나 감사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업무상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전담 및 비전담의 의미가 없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 속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자체감사의 독립적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감사기구장의 자격·임용 등

#### (1) 자격(경력)

자체감사 책임자가 감사기구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는 46.7%에 불과하여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책임자가 감사기구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의 근무경력 평균 3.5년의 경력을 가

42) 이혜승(2009),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조사』, Executive Report 2009-07, 서울 : 감사연구원, pp. 1~28.

지고 있다.

## (2) 임용

자체감사의 책임자 임용방식은 내부 인사발령, 개방형 임용, 공모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발령에 의한 임용이 91.7%로 개방형(4.3%), 이나 공모형(3.3%) 임용 사례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감사책임자를 개방형으로 임명하는 경우는 국가기관의 9개부와 3개청에서, 자치단체는 경기도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모제의 경우는 국가기관(산림청, 방위사업청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 및 자치단체(충청남도, 창원시 부산 연제구, 대구 동구와 광주 동구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감사기구장의 권한과 신분보장

감사책임자가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어느 정도 가질 필요성이 있으며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한 신분보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 감사담당자 전보 등 인사 시 감사 책임자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가 45%(135개)를 차지하고 있어 감사책임자의 권한이 제한적이다. 국가기관의 89.5% 정도는 감사책임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단체의 경우는 48%에 불과하며 감사담당자 전보 등 인사 관련 권한을 가진 경우 추천이 전체의 10.3%(31개), 사전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28.7%(86개), 나머지 16.0%(48개)는 추천 및 사전협의를 병행하고 있다.

자체감사 책임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1.7년으로 2년이 채 되지 않아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전체의 84.3%(253개)가 감사책임자의 임면과 관련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아 신분보장에 대한 법적기반이 취약한 상태이다. 또한, 감사책임자의 직급은 95.4%(536개)가 수감기관(또는 부서)의 장보다 낮게 나타나 감사대상 부서에 대한 독립성 확보 및 내부통제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전문성

### 1) 감사담당자의 임용·우대 등

#### (1) 임용

감사전담직원이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64%(192개)에 이르지 만 대부분의 직원이 1급 및 2급 기사자격증 소지자로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가진 감사직원이 있는 경우는 과기부 등 6개 기관과 서울시 등 4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이것으로 보아 감사담당자 임용 시 감사분야 관련 자격증 등 감사역량보유와 상관없이 순환인사에 따라 보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전문성은 전문영역에 대한 감사에 한계가 있으며 감사 수행 시 단순지적이나 순응감사 위주, 합법성감사에 치중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2) 감사담당자에 대한 우대 조치

우수감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출 시 희망보직제, 근무평가우대, 근속가점, 다면평가 불이익 해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관은 46.7%(140개)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출 시 희망보직제(50.7%), 근무평가우대(30.7%), 근속가점(26.4%), 다면평가 불이익 해소(13.6%)순이며, 국가기관(38개)에서는 전출 시 희망보직제(76.3%)와 근무평가우대 및 근속가점(각 6.5%)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재직기간

자체감사 직원들의 자체감사기구 평균 근속 근무기간은 평균 2년으로 나타나 감사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높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순환인사와 관계없이 장기근무 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2) 감사담당자의 교육

감사담당자의 감사전문교육을 받은 기관은 60%(180개)이며 통상 감사교육원의 5일 단기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나 현장체험교육 기회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입일로부터 감사전문교육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1개월 정도로 전입 후 상당기간 교육 없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체계적인 감사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자체 감사활동

### 1) 감사계획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하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감사계획 결정자는 전체기관의 95.7%가 기관장(251개)과 부기관장(36개)으로 나타나 자체감사 활동의 자율성은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감사계획이나 결과의 확정예 감사기구의 장이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2) 감사결과 공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나 감사결과 최종보고서의 내부공개는 39.3%이고 외부공개는 34.3%로 나타나 자체감사기구의 책무성이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 4. 정부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시사점

이상에서 감사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조직, 인사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정부기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등이 미흡하여 자체감사의 효과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요인으로 조직의 독립성 및 인사의 독립성으

로 구분될 수 있으며 조직의 독립성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이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하지 않아 독립적 감사수행에 미흡한 실정이며, 감사책임자의 임용방법이나 자격요건, 권한과 신분보장 등의 측면을 살펴보다도 우리나라 자체 감사기구 감사책임자에 대한 인사운영방식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먼저, 자체감사기구 감사책임자에 대부분이 내부 인사발령을 통해 임용되고, 감사책임자의 근무기간이 평균 2년이 채 안되며, 소속 감사인력에 대한 아무런 인사권한이 없으며, 수감기관의 장보다 직급이 낮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감사기구의 전담기구의 확대, 감사기구 장의 개방형 확대, 임기 등 신분보장, 수감대상을 고려한 적정 직급 설정, 감사담당자에 대한 인사 추천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성 측면을 보면 순환보직에 의한 인사로 인하여 일정근무 후 다른 부서에 배치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전문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 직원의 대부분이 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 직원이 있는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우수 감사인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전보 시 희망 보직제, 근무평가우대, 근속가점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기관은 많지 않은 편이다.

결국 전반적으로 정부부처의 감사기구는 조직 및 인력상의 독립성 결여와 감사인력의 전문성 미흡으로 자체감사기구의 제역할 수행을 위해 개선할 점이 많다 할 수 있겠다.

### 제 3 절 주요 선진국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

본 절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 고찰 하고자 한다. 앞에서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관 및 정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를 통하여 국내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체감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요 선진국의 자체감사기구를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 영국의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1. 미 국

미국에서 법령상 최초의 자체감사기구는 1970년 중반 집행기관의 리더쉽에 대한 의회의 불신을 반영하여 1976년에 설립되었고 대부분의 자체감사기구는 1978년 자체감사법(Inspector General Act)이 1988년 개정된 자체감사법(Inspector General Act Amendments)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자체감사관(Inspector General : IG)은 행정부처와 연방기관에 설치되어 있다.<sup>43)</sup>

연방정부의 자체감사기구 장인 자체감사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감사관의 해임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해임 시에는 그 사유를 양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매 6개월마다 활동 내역을 요약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sup>44)</sup> 또한 자체감사관은 감사에 관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과 수집권, 소환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감사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임명권도 행사하며, 감사계획의 수립·실시·결과의 처리와 자료의 소환 등 직무수행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철저한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sup>45)</sup>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는 지방정부감사법, 지방정부법, 단일감사법 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형은 주정부 회계감사들에 의한 감사형태이고, 두 번째 유형은 지방정부가 주정부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 주정부 감사관이 감사를 하는 형태이며, 셋째는 자치단체가

43) 김명수, 전게서, p. 167.

44) 이기동(201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 31.

45) 김명수, 전게서, p. 167.

민간회계검사기관을 두면서 감사담당관을 주민의 투표로 선임하거나 자치단체장이 4년의 임기를 주어 임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46)

미국연방정부의 「감찰관법」에서는 감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회계, 감사, 재무분석, 법률, 경영, 행정, 수사 등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주정부의 경우는 자체감사관의 임명절차 및 자격요건에 「내부감사법」이나 「내부통제법」에 규정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내부통제나 예산정책 및 보고 매뉴얼에 내부감사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교육과 경험”을 가져야 한다거나 “내부감사인협회의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감사인협회(IIA)의 주정부를 위한 입법모델에서 감사책임자는 학사학위와 5년의 감사경력(내부감사, 외부감사, 정보통신감사 등), 석사학위와 4년의 감사경력, 공인내부감사자(Certified Internal Auditor, CIA) 또는 공인정부감사전문가(Certified Government Auditing Professional, CGAP)자격증과 4년간의 감사경력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47) 또한 「정부감사 기준」에 의하면 감사인은 2년마다 80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2. 영 국

감사원 연구에 의하면 영국의 내부감사시스템은 웨스트민스터 모델(Westminster Model)이라고 하며 각 부처·청에 분야별로 감찰기구(Inspectorate)를 두고 별도로 내부감사관과 회계관을 두는 분권형을 취하고 있고 회계관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재정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재무성 장관에 의해 임명되지만 사전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내부감사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내부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결과는 기관장, 회계관, 그리고 내·외부 감사기관 대표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48)고 한다.

46) 서보강(2009),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기능강화 모형설정」, 대구 :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6~27.

47) 허명순, 전개논문, pp. 49~50.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감사제도는 주로 수석재무관(Chief Finance Officer)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수석재무관을 책임자로 하는 내부감사인인 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다. 1972년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에서는 수석재무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1988년도 지방정부법은 수석재무관의 자격을 공인회계사협회에 속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수석재무관은 단순히 재무감사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진반에 관하여 자문역할을 하며 지방정부 내부에 존재하는 정당세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간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하고 외부감사관에게 지방정부의 위법이나 손실발생이 있는 재정행위를 보고할 의무를 진다. 지방정부 감사위원회는 지방정부 감사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집행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설치되었으며 감사수수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49)</sup>

영국의 경우 내부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내부감사자격증(GIAC, Government

Internal Audit Certificate)을 소지해야하며 정부내부감사기준에 GIAC는 내부감사인에 요구되는 최소 수준의 기술, 지식 및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내부감사는 GIAC를 보유한 감사인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내부감사관은 중앙정부의 경우 정부내부감사자격증(GIAC)을, 지방정부의 경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뒤 등급에 따라 인증서를 받고 내부감사인을 채용할 때도 이러한 등급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판단하며 지방정부 내부감사인은 공인재무회계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등 지방정부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sup>50)</sup>

영국의 감사 교육훈련기관은 대표적으로 IIA 영국지부와 IIA가 승인하는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IIA 영국지부는 미국본부와 마찬가지로 직급별·분야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감사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개발(CDP)활동으로 매년 5일에서 10일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전문가 개발은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세미나 참석, 전문가 자격증 취득,

48) 허명순, 전제논문, p. 44.

49) 이주희, 전제논문, p. 35.

50) 허명순, 전제논문, pp. 47~50.



실무경험, 연구 및 논문 기고 등을 포함한다.<sup>51)</sup>

### 3. 미국·영국의 자체감사기구의 시사점

이상에서 주요 선진국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를 미국과 영국의 자체감사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미국과 영국의 자체감사기구 운영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은 감사조직의 조직상, 감사활동, 인사에 있어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감사인의 채용 시 전문자격 요구 및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자체감사제도의 특징을 보면 첫째, 감찰관의 독립적 지위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감사기구를 기관장 직속에 설치하고, 감사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임명권도 행사하며,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의 실시, 감사 결과의 처리와 소환 등 직무수행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철저한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감찰관 및 감사인의 임용 자격 요건으로 회계·재무·감사경력 등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모든 감사인들이 2년간 8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감사인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셋째로 감사인의 신분안정성이다. 감찰관들은 자체감사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임명권도 가지기 때문에 적임자를 확보할 수 있고, 감사인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다른 부서로 전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 감사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자체감사제도의 특징을 보면 첫째,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내부감사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정부 감사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집행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설치되어 감사수수료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등 독립성 제고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 내부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감사자격증(GIAC, Government Internal Audit Certificate) 소지를 요구

---

51) 허명순, 전제논문, pp. 54~55.

하고 있으며 IIA 영국지부는 미국본부와 마찬가지로 직급별·분야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제 4 장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

본 장에서는 방위사업분야, 정부기관 및 주요 선진국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자체감사의 운영방향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감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1 절 우리나라의 자체감사의 운영 방향

#### 1. 개 요

최근 이슈가 된 금융감독원 및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아직도 금품수수, 뇌물, 청탁 등 후진국형의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이나 예산낭비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의 감사인력의 한계로 전체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와 낭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이와 달리 자체감사기구인 감사원보다 6배나 많은 5천여 명(공공기관 제외)의 감사인력을 보유하고도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사이에 역할분담이나 협력체계가 없어 감사중복이나 감사사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감사인력이 낭비되는 등 허술한 국가 공공감사시스템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각종 부조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의 주요 내용

##### 1) 제정목적

「공감법」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내부통제를 내실화하고, 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와 낭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즉, 우리나라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과 자체감사 기구 사이에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감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여 그 운영의 적정성, 효과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2010년 3월 국회에서는 공공감사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인 「공감법」을 제정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과 공공감사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2) 주요내용

### ①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중앙행정기관 등의 규모, 관장 사무,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 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및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직위 등 임용, 임기 내에는 신분을 보장토록 하였다.

감사의 독립성이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내·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sup>52)</sup>을 말하는 것으로 금번 법제정시 포함하였다.

### ② 자체감사의 전문성 제고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임용자격, 감사담당자의 임용결격사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마련, 감사담당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서 우대 등 감사인의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기관내부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였다.

감사에 있어 전문성이란 ‘감사에 관한 전문성’ 및 ‘감사대상 특정업무에 관한’ 전문성<sup>53)</sup>을 말하는 것으로써 감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52) 감사원, 전계서, pp. 104~108.

53) 상계서, p. 113.

「공공감사기준」 제9조에 의하면 특정 감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사반은 당해 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하며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 감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또한 특정 감사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사능력을 연마하고 감사기관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를 지원토록하고 있다.

### ③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자료제출요구 등의 권한 보장,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정지제도 도입 등 감사 활동과 감사결과 처리에 필수적인 권한 등을 규정했으며, 감사활동에 준수해야 할 감사기준 및 활동수칙은 감사원규칙으로 규정하여 내실 있는 자체감사활동을 위해 감사절차 등을 표준화하였다. 또한 재심의와 감사결과 공개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및 감사품질확보를 가능케 하였다.

### ④ 자체활동체계의 개선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및 기타 감사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감사원은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감사활동대책을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자체감사 운영 등에 있어 이를 준수토록 하였다. 또한 감사원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의 대행 및 활성화에 대한 노력, 대행 감사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생략토록 하였다.

### ⑤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감사원은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지원과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인력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자체감사활동에서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감사원규칙으로 제정·운영 등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지원을 규정하였다.

## 제 2 절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 방안

### 1. 필요성

감사의 독립성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감사환경하에서도 꼭 보장되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써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sup>54)</sup>을 말하며, 독립성 요건으로 감사업무 수행상의 독립성, 감사요원의 신분상 독립성, 자체감사기구 운용과 관련된 재정상의 독립성 등<sup>55)</sup>을 제시하고 있다.

감사연구원의 자체감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설문<sup>56)</sup>에서 응답자의 88.1%가 ‘자체감사기구의 독립 미흡’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 방안으로 응답자의 85.2%가 전담기구의 설치를 81.6%가 감사책임자의 자격요건 강화를 들었다. 또한, 감사책임자의 직급상향으로 72.4%, 자체감사 책임자에게 감사인의 임명권 부여 62.5%,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의 개방형 직위 선출 45.7%순으로 응답 하였다.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운영방향에서도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선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감사기구장의 임용·자격, 권한 강화와 신분보장에 대하여 법으로 명문화하여 강제적으로 이행 또는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감찰관의 독립적 지위가 확보되어 있다. 감사기구를 기관장 직속에 설치하고, 감사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임명권도 행사하며,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의 실시, 감사 결과의 처리와 자료요구, 소환 등 직무수행에 관하여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54) 김명수, 전게서, pp. 86~89.

55) 이주희, 전게논문, p. 33.

56) 감사연구원(2009), 전게서, pp. 22~23.

않고 있으며, 지방정부 감사위원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집행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설치되어 감사수수료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등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 임용 등에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방위사업분야 기관인 방사청, 기품원, 국과연의 경우 자체감사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기관의 경우 부기관장 직속으로 되어 있으며, 자체감사 기구장 임용 시 외부공개모집 또는 공모형 모집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감사와 관련된 명확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감사분야 미 경력자가 임용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의 자체감사인력이 감사대상인원 대비 0.2% 수준으로 감사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감사기구장의 직급이 수감부서·기관의 장보다 낮은 기관이 있어 내부통제에 한계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자체감사 운영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에서 대부분이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하지 않아 독립적 감사수행에 미흡한 실정이며, 감사책임자에 대부분이 내부 인사발령을 통해 임용되고, 재직기간도 2년이 채 안되며, 소속 감사담당자에 대한 인사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수감기관의 장보다 직급이 낮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감사책임자에 대한 임용방법, 자격요건, 권한, 신분보장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독립성 제고 방안**

###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자체감사기구의 본래 기능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내의 다른 부서와는 별도의 전담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 감사기구의 위치는 부서장의 관심, 감사결과의 왜곡방지 등을 위해 계선조직으로부터 독립되어 기관장 직속에 위치하여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방사청의 경우 부기관장직속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감사규정을 갖고 있고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품원 및 국과연의 경우도 기관장 직속기관으로 별도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외형적으로는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사청의 경우 자체감사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관장 소속으로 조직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개방형 임용 및 자격요건 강화

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 개방형직위화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 민간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수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자체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현재 방사청의 감사기구의 장은 임용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감사관 직위는 부처자율형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기제한이 없는 공개공모형태로 선발하며, 응모자격은 고위공무원 2년 이상 등으로 되어 있다. 기품원과 국과연의 경우는 임원자격추천위원회 규정 또는 별도의 자격기준·절차에 의해 공개 모집하여 선발하고 있으나 임용 조건 및 자격기준이 감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다. 감사책임자의 자격조건에 대한 설문<sup>57)</sup> 결과에 의하면 감사책임자 임용 시 자격조건으로 41%가 감사업무 경험, 36.5%가 행정업무 경험, 13.0%가 특정분야 전문지식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전문가의 경우는 행정업무 경험(22.0%) 보다 특정분야 전문지식(35.0%)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공인내부감사사 자격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3개 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 외국의 사례 및 의견수렴결과 등을 고려 공인내부감사사(CIA) 등 감사자격증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감사 관련 전공자, 감사관련분야 경력자 등 임용조건을 설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용해야 하며 더 나아가 자체감사기구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 3) 감사기구장의 권한 및 신분보장

자체감사기구장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독립성이 관련법령 또는 규정에서 적정이 정하여져 보장되어야 한다. 자체감사에 대한 연간계획, 중요 감사결과 확정권 등을 제외한 자체감사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은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임토록 하는 등 직무상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57) 감사연구원(2009), 전제서, p. 26.



조직의 장악력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감사담당자에 대한 인사권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 감사담당자 선발 시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인의 신규임용 시 감사기구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구비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감사담당자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제출하는 등의 의견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장은 가급적 제출받은 명단을 존중하여 감사담당자를 임용하도록 해야 하며, 감사담당자의 전보나 교체 등이 예정된 경우에도 감사기구의 장은 전보조치 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관장에게 부적정한 사유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기구장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임기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체감사 대상 기관의 수, 인원, 예산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직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방위사업분야 3개 기관의 경우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담당자의 인사와 관련하여 추천 또는 사전 협의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부여와 관련해서는 기품원과 국과연의 경우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임원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방사청 감사관의 직위는 고위공무원 “나”급에 해당되어 감사 대상기관(“가”급)이 피 감사기관의 기관장의 직급이 높아 독립적 감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기품원 및 국과연의 감사기구의 장의 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감사부서장에 대한 임용 방법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 순환보직에 의해 인사발령으로 임용 또는 전보를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책임지고 있는 감사부서 책임자의 경우는 순환인사에서 제외하고 조직내부의 직위공모직위로 개선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인력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정에 별도 임기를 두어 신분보장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 제 3 절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제고 방안

#### 1. 필요성

자체감사의 전문성이란 감사인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의미한다.<sup>58)</sup> 여기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이란 감사업무의 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감사 기법·방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 등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자체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중요하며 특히, 행정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그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감사 역시 전문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 감사담당자는 필요한 지식과 경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채용 또는 인사교류 등의 방법으로 전문성 있는 감사담당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방위사업분야는 국방무기에 대한 획득, 연구개발, 품질보증 등을 수행함에 따라 타 부처의 감사기구보다도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전문인력의 임용,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

방사청의 경우 임용 시 추천 및 사전협의를 통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전보 시 개인 희망 반영, 인센티브 지급 등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으나 감사 대상이 방사청 업무이외 산하연구기관의 연구개발, 품질경영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만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하여 감사원교육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교육 및 청 내부에서 실시하는 방위사업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기품원 및 국과연의 경우도 평가 시 우대, 인센티브 지급(일부 미지급), 전보 시 개인 희망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미흡하며 감사 담당자의 교육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아울러 일반적인 감사기법, 회계감사교육 이외 방위사업관련 교육을 이수할 필요성이 있다.

58) 김명수, 전게서, pp. 86~89.

## 2. 전문성 제고 방안

### 1) 전문 감사인 선발 및 우대(優待)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용 시에는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행정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그것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감사역시 전문화 되어 전문성 있는 유능한 감사인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 감사품질도 달라지므로 우수감사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자격증 및 경력이 있는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자체 충원한다는 것은 순환보직 등과 연계에 있어 쉽지는 않다. 자체감사기구운영실태<sup>59)</sup>에 의하면 감사기구 평균근무기간은 2년 정도로 근무기간이 짧아 근무기간 중 감사관련 지식 등을 축적하기 어려우므로 임용 시 감사분야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책임자의 임용이 더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용 또는 전입 시 감사관련 경력자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내부감사사(CIA), 감사관련 전공자 등 자격조건을 제시하여 해당자에 한하여 임용·전입이 필요하며, 임용 또는 전입된 감사담당자는 최소 3년 이상 감사기구 근속을 보장하여 감사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감사담당자는 의무적인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과 사전에 상의토록 해야 한다. 또한, 근무기간 중에 근무성적, 성과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감사담당자 직위를 가점부여 직위로 지정하거나 감사수당 등 인센티브 부여, 감사담당자를 전보 조치하는 경우 해당 감사담당자가 원하는 보직으로 우선 배치하는 등 자체감사인력에 대한 우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2) 교육훈련 강화

자체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조직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인의 기본적인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감사실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자체감사인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기관

---

59) 이해승, 전제서, p. 9.

은 감사원의 감사교육원과 민간교육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은 감사교육원을 이용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교육과정<sup>60)</sup>은 감사직원과정 16개 과정, 자체감사교육 11개 과정, 회계업무 교육 7개 과정, 사이버교육, 국제공공감사 훈련과정, 국가현안과제 등으로 구분되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에서는 감사 등으로 인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교육 적정 시기를 놓치는 등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있어 교육훈련과 업무 적용에 있어서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본다.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조사 결과<sup>61)</sup>에 따르면 감사전담직원들이 전입일로부터 평균 11개월이 되어서야 감사전문교육을 받았으며, 평균 16.8개월이 되어서야 회계전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순환보직 등을 고려 시 교육의 효과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감법」 또는 감사원 지침 등에 교육시기, 시간, 이수과목 등을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는 감사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자격증<sup>62)</sup> 취득교육도 개설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회계 및 감사관련 자격증을 개설하고 이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sup>63)</sup>하며 관련자격증 취득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격취득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한편 연간 교육시간에서도 미국의 경우 정부감사기준에서 ‘감사인인 2년마다 80시간 이상의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화 하고 있으나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시기구 감사인의 교육 실적은 아주 미흡하며 회계교육을 전입 후 2년차에 실시하고 있는 등 자체감시기구 감사인력에 대한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다양화 하여 일상의 업무로 집체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감사관련 직원들에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감사교육원에는 사이버교육에 8개 과목(10회)이 개

60) 감사교육원(2011), 『2011년도 교육훈련계획』, 경기 : 감사교육원, pp. 4~8.

61) 이해승, 전제서, p. 9.

62) 공인내부감사자격증(Certified Internal Auditor, CIA), 공인정부내부감사자격증(Certified Government Auditing Professional, CCAF) 등의 자격증제도 등이 있다.

63) 허명순, 전제논문, p. 85.

설되어 자체감사직원의 소양 및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이해, 감사 실시 및 처리요령 등 3개 과목, 회계관계직원의 기본 소양 및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공공계약법규 등 4개과목, 집체교육 입교 전 선수과목으로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1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잘 정비된 교육체계는 물론 우수 교수요원을 선발하여, 교수요원의 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우수한 교수요원, 잘 정비된 교육체계 등으로 잘 훈련된 감사분야 전문가는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와 연계되어 보직 및 경력관리와 연계될 때 비로소 교육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의 연계를 강화<sup>64)</sup>해야 한다.

### 3) 외부전문가의 참여 및 활용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 방법 이외 소속 자체감사인원의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계·보건·환경·건설·국방무기체계 연구/개발분야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특정 전문분야의 감사 시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가 필요가 있으며 현직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전문성 확보는 물론 자체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기술혁명으로 인하여 전쟁의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가져와 방위사업분야의 각 기관은 최첨단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획득, 품질보증,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은 물론 외부전문가, 감사자문위원회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

64) 윤종식(2010), 「감사교육원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2010 연구논문집』, 경기 : 감사교육원, p. 321.

##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방위사업분야, 정부기관 및 외국 주요 국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자체감사기구의 문제점, 「공감법」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의 활성화 내지 강화방안으로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방안은 방위사업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가 본래의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통 개선 방안이라 볼 수 있다.

그 동안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기타 단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로 국회, 감사원 등 외부 통제장치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으나 감사원의 감사인력의 한계, 감사대상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체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와 낭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통제하기는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문제점 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한 자체감사기구의 장점을 살리면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독립성·전문성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체감사기구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공공감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최근의 금융감독원 및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에서 나타난 감사인들의 윤리성 문제로 인하여 감사원 등 자체감사기구에 대한 신뢰성이 실추되어 청렴성, 객관성, 보안유지 등으로 구체화된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의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검토 결과에 의하면 방위사업분야를 비롯한 우리나라 자체감사 기구는 전반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자체감사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독립성, 기관장의 의지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방위사업분야의 자체감사기구는 별도 감사전담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으나,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따라 감사의 전문역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는 것

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행 자체감사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제고 방안

감사의 독립성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꼭 보장되어야 할 본질적인 사항으로 감사업무 수행 시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자체감사기구의 본래 기능과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내의 별도 전담기구를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 개방형 임용 및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 임용 시 개방형직위화하여 공직내부 또는 외부 민간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수인력 확보가 가능해져 자체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감사기구 장의 권한 및 신분보장이다.** 자체감사기구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기구장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임기 및 신분이 보장되어야하고, 자체감사 대상 기관의 수, 인원, 예산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직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 2.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제고 방안

자체감사의 전문성이란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으로 감사업무의 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더불어 감사 기법·방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자체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중요하며 특히, 행정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전문성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문 감사인 선발 및 우대(優待)이다.** 감사담당자의 임용 시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평정, 감사수당 지급 등 관련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 강화이다.** 자체감사기구가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인의 기본적인 역량과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감사실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전문가의 참여 및 활용이다.**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 방법 이외 소속 자체감사인의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참여 및 내부에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전문성은 물론 자체감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감사교육원(2009), 『2009 공공기관 감사실무과정교재』, 감사교육원
- 감사교육원(2010), 『2010 공공기관 직무교육교재』, 감사교육원
- 감사교육원(2011), 『2011년도 교육훈련계획』, 감사교육원
- 감사연구원(2009), 『자체감사제도개선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감사연구원
- 감사원(2008), 『자체감사기구 운영표준모델』, 감사원
- 강경규(1999),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논총, 제18집』, 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 기획예산처(2007),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매뉴얼』, 기획예산처
- 김난영(2010), 「사례연구를 통한 ‘자체감사기구 운영 표준모델’개선방안 연구」 감사연구원
- 김명수외(2010), 「자체감사기구 운영사례연구」, 감사연구원
- 김명수외(2007), 『자체감사론』, 대영문화사
- 김홍률(2010), 「내부통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2010연구논문집』, 감사교육원
- 서보강(2009),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기능강화 모형설정」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대우(2009), 「공기업 자체감사의 실효성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종식(2010), 「감사교육원 교육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2010연구 논문집』, 감사교육원
- 이기동(201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세도(2010), 『방위사업청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한국행정학회·공공감사연구회
- 이주희(1998),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관의 독립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단체학회보, 제10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단체학회

이혜승외(2009), 『자체감사기구 운영 실태조사』, Executive Report 2009-07,  
감사 연구원  
차영구외(2004),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오름  
한국행정학회·공공감사연구회(2010), 『자체감사기구 운영사례연구 : Best  
Practice의 발굴』  
허명순외(2010),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방안」, 감사연구원  
황현성(2006), 「자체감사기능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기 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49호, 2010. 6.3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3, 2010., 3.22)  
국방과학연구소 감사규정(2010. 7.20. 규제512)  
국방과학연구소(2010), 『2010년 국방과학연구소 자체감사기구 운영 조사  
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법(법률 제10215호, 2010. 3.31)  
국방기술품질원 감사규정(2009.10.13)  
국방기술품질원 감사요령(2006. 7.25)  
국방기술품질원(2010), 『2010년 국방기술품질원 자체감사기구 운영 조사  
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부(2009), 『감사실무편람 I』, 국방부  
방위사업청(2010), 『2010년 방위사업청 자체감사기구 운영 조사표』, 방  
위사업청,  
방위사업청(2010), 『방위사업청 통계연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행정감사규칙(방위사업청훈령 102호, 2009. 8. 5)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20741, 2008. 2. 29)

<http://www.dapa.go.kr>(방위사업청홈페이지)

<http://www.dtaq.re.kr/>(국방기술품질원홈페이지)

<http://www.add.re.kr/>(국방과학연구소홈페이지)

<http://www.pasa.go.kr/pasa.html>(공공감사 홈페이지)



# **ABSTRACT**

##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Internal Audit**

- Focused on the Internal Audit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Sector -

**Yong-wan, Byun**

**Major in Division of National Defence  
Management**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the internal audit of defense acquisition program sector and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and advanced nations and thereupon, suggest the ways to reinforce the internal audit activities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secto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our internal audit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sector were less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On the other hand, a survey conducted by the Audit and Inspection Research Institute indicated that the primary reasons for the poor internal audit activities was lack of independence, top management or administration's reform mind and professionalism. All in all, it was confirmed that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internal audit activities were the important keys to the reinforcement of the internal

audit.

Based on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to address the problems of the internal audit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sector and thereby, enhance independent and professional internal audit activities with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sector and government agencies as well.

First, the reform measures for the independence of the internal audit activities are ①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internal audit department, ② reinforcement of the qualifications for the director of the department, and ③ guarantee of director's authority and status.

Second, the reform measures for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ternal audit activities are ① recruitment of the professional auditors and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m, ② reinforce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③ outside professionals' participation and operation of the internal advisory committee.

Lastly, although they are not covered by this study, auditors moral hazard disclosed in the recent corruption cases involving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Busan Savings Bank has tarnished people's trust of such audit and inspection organizations as Audit and Inspection Board. Hence, it is deemed urgent to find the reform measures to obligate auditors to abide by such moral guidelines as integrity, fairness, neutrality and confidentiality.